■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8.>

[ ]총포 [ ]도검 [ ]판매업 [ ]화약류 [ ]분사기 [ ]임대업 [ ]전자충격기 [ ]석궁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호	
	사무소 소재지	
	판매업(임대업)명	
	판매소(임대업소) 소재지	
	판매(임대)종류	월 판매(임대) 예정량
	보관 또는 저장방법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업소(임대업소)의 위치・구조・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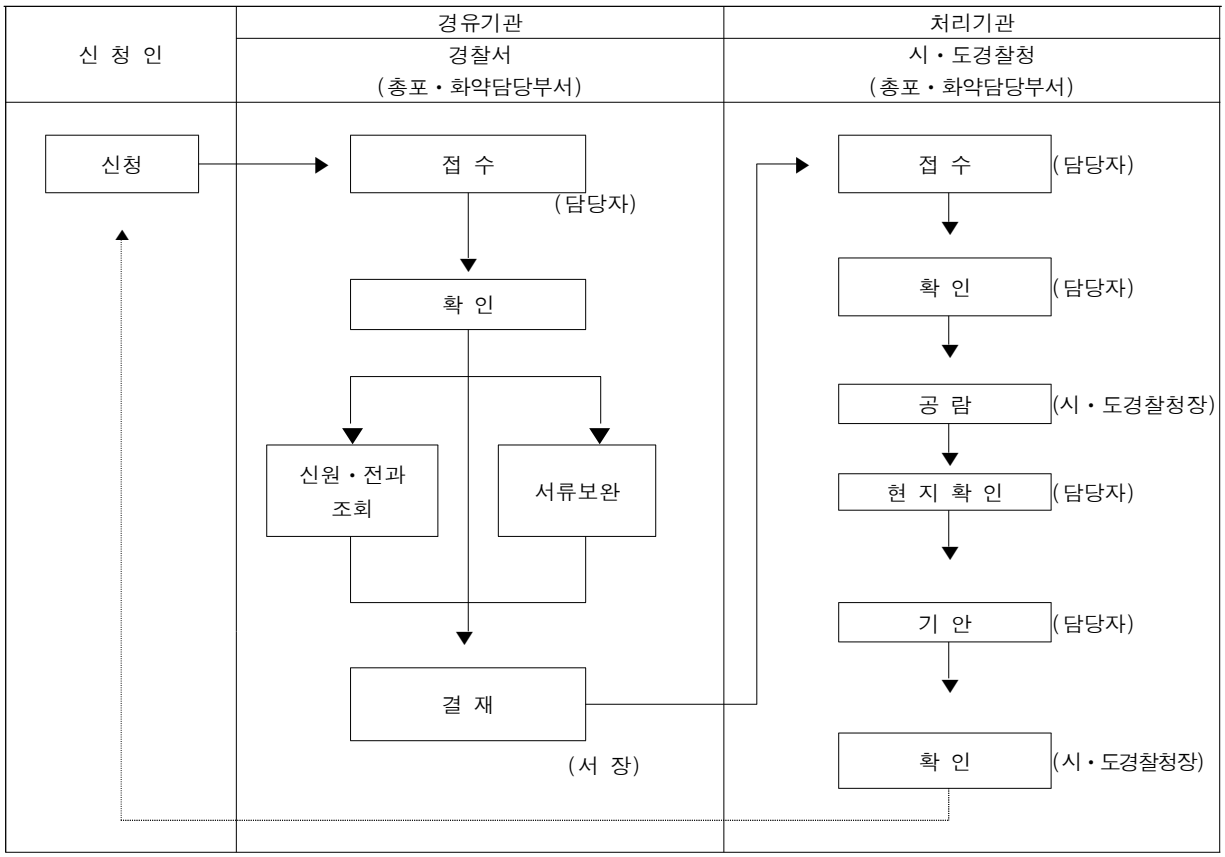
나. 판매하려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임대하려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다. 관리 또는 그 밖에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안전교육계획서(화약 판매업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수수료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 임대업 허가: 15,000원

2. 화약류 판매업 허가: 20,000원